

대한시과학회지 연구부정행위 관리지침

제1조(목적) 본 지침은 대한시과학회(이하 '학회'라 한다)에서 제정한 연구윤리진실성규정 하위 지침으로서 본 학회 학술지에 접수된 논문이 출판되기까지 편집심사 전 과정에서 연구윤리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는 논문 범위) ① KCI와 잼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확장유사도 검사(카피킬러) 5 어절 이상, 1문장 이상 일치 기준(인용·출처 문장과 참고문헌은 제외)으로 표절률이 15%를 상회하는 논문은 의심수준으로 판단하며, 0%이상에서 15%미만의 양호수준으로 낮추도록 권장한다. 다만 발표논문을 정규논문집에 투고한 경우나 본인의 학위논문을 정리하여 투고한 경우는 카피킬러 기준으로 표절률이 20%를 상회하는 논문을 말한다.

② 학회 투고규정의 제출원고 형식을 준수하지 않거나, 번역 및 맞춤법 오류가 다수 존재하여 표절 검사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논문을 말한다.

③ 학위논문을 정리하여 투고한 논문의 저자로서 학생과 지도교수 이외 제 3자가 공저자로 포함된 논문을 말한다. 다만 투고 논문이 학위논문과 상이한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제 3저자의 논문 작성의 기여도를 학회에 소명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④ 투고자 본인의 학위논문을 요약하여 별도 표기 없이 투고한 논문을 말한다. 다만 학위논문을 요약했다는 내용의 주석이나 본문 각주가 표기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⑤ 가족(부모와 자녀 또는 부부)이 공저한 논문을 말한다. 다만 가족이 논문 주제와 관련된 석사 이상 학위를 보유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⑥ 연구보고서, 타인의 학위논문을 인용하여 작성한 논문을 말한다.

⑦ 복수 학술지에 동일 또는 유사 주제의 논문을 투고한 논문을 말한다. 다만 다른 학술지에 투고하거나 이미 출판된 논문을 철회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⑧ 제목, 연구모형, 가설, 개념변수, 표와 그림, 연구결과 등 논문 구성요소가 선행 연구들과 매우 유사한 논문을 말한다. 다만 선행 연구와 유사한 부분을 인용을 통해 모두 명시하고 투고 논문의 차별성과 연구 기여도를 학회에 소명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⑨ 연구윤리규정 제5조 연구부정행위의 범위에 해당하는 논문을 말한다.

제3조(적발된 논문 조치) 연구윤리규정 제13조 및 제19조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제4조(기여도 배분) ① 논문 등 출판된 연구결과에 기재된 저자들은 그 연구내용을 숙지함으로써 책임을 다할 수 있어야 하며, 기여도가 없는 사람에 대하여 저자의 권한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

② 공식적인 공동연구자 또는 출판물의 작성에 직간접으로 기여한 사람들은 논문 등에 표시되는 방법에 따라 적절히 보상되어야 한다.

③ 제1저자는 연구의 공헌도가 가장 높은 사람으로 주요 연구를 직접 수행한 연구자는 이어야 하고, 교신저자는 논문작성을 책임지고 연구진행, 교신을 진행하는 연구자이어야 하며, 공동저자는 연구에서 역할을 담당한 연구자로 기여도에 따라 저자 순서를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